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3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정부의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WTO/FTA등 세계화와 급변하는 시대상황과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정원조정 517 →526 (9명)
 · 집행기관 507 → 516 (9명)
 · 의회사무과 10 (변동없음)
○ 한시정원 2명(정보화사업추진) → 상시정원

3. 자치법규안 : 붙임과 같음.

4. 신·구 대비표 : 붙임과 같음.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자료
 · 조직개편(안) : 붙임
 · 성주군 기구·정원승인 [자치행정과-1212(2.10)] : 붙임.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(정원의총수)중 "517"을 "526"로 하고, 동조제1호중 "507"을 "516"로 한다.

조례 제1723호(2003.1.2) 성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제2항중 "2004. 6. 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"를 "상시정원으로 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성주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17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집행기관 : 507명 2. (생략) 부칙(2003.1.2 조례 제1723호) 제2항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2000.12. 7 조례 제1654호 부칙 제2항의 정원은 2004. 6.30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····· ····· 526····· ····· 1. ····· 516··· 2. (현행과 같음) 부칙(2003.1.2 조례 제1723호) 제2항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····· ····· 상시정원으로 한다.